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63

발의연월일: 2020. 12. 10.

발 의 자:최춘식·정희용·박대수

김희곤 • 이달곤 • 서범수

구자근 • 이종배 • 김용판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 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

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안 제5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5년</u>	<u>7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	<u>7천만원</u>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
	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
	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
	<u>에는 「형법」 제10조제1항・</u>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u>아니할 수 있다.</u>